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5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한민수 · 김영환 · 박정현
허 영 · 김용만 · 박용갑
이해식 · 이연희 · 손명수
이학영 · 강준현 · 민병덕
문진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를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로,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를 “제241조, 제24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